# 특허실시권허락 계약서

ABC( 이하 " 갑" 이라고 함)와 XYZ( 이하 "을" 이라고 함)는, 이하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관하여 금일(계약 체결일)을 기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실시계약( 이하 "본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 제 1 조 (실시권의 허락)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발명(이하 "본발명"이라고 함)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허락한다.

- 특허 등록번호 및 발명의 명칭
- (\* 출원중인 경우는 출원번호 및 발명내용, 특허를 받을 권리인 경우는 발명의 기술내용 등을 기재함)

#### 제 2 조 (실시권의 범위)

앞서 제 1 조의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지역 : 한국 (\* 기타 국가 또는 권리가 유효한 모든 국가 등으로 규정함)
- 기간 : (\* 당사자가 합의하는 실시 기간을 명시함 )
- 내용 : 본발명을 이용하여 제조. 판매 및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 (\* 제조 등 어느 기능에 한정할 수도 있고, 판매 등의 수량을 한정할 수도 있음)

### 제 3 조 (제 3 자에 대한 실시권의 허락)

3-1. 갑은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발명의 실시를 을 이외의 자( 이하 "제 3 자"라고 함 )에게도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3-2. 전항 3-1 의 경우, 갑은 사전에 을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 4 조 (재실시허락의 금지)

을은 제 3 자에게 본발명의 실시를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조 (권리의 등록)

- 5-1. 을은 본 계약의 체결에 기초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실시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다.
- 5-2. 전항 5-1 의 수속은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제 6 조 (실시료)

6-1. 을은 갑에 대하여 본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시료로서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 본발명을 사용한 제품의 매출액의 ()%
- (\* 매출액 기준의 실시료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합의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실시료 결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6-2.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전항 6-1 의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자까지 일수에 비례하여.()%를 계산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6-3. 을은,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구의 범위가 변경 혹은 감축된 경우,
-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 혹은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 확정일자까지의 6-1 에서 규정한 실시료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
- 6-4. 을은, 갑이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제 3 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이전의 날자까지의 6-1 에서 규정하는 실시료의 지불채무를 면할 수 없다.
- 6-5. 갑은,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구의 범위가 변경 혹은 축소된 경우,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미 지불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6-6. 갑은, 본계약이 해제된 경우, 또는 을에게 기인하는 사유에 의하여 실시료 반환청구가 제기된 경우, 이미지불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 7 조 (실시료의 변경)

7-1. 을은, 본발명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 중에서 일부의 권리에 대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일부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영향을 받는 범위이내에서 지불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실시료의 감액에 대하여 갑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7-2. 을은,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의 변경 또는 감축이 있은 경우, 당해 영향을 받는 범위이내에서 지불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실시료의 감액에 대하여, 갑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7-3. 갑 또는 을은 경제사정 기타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지불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실시료의 변경에 대하여, 을 또는 갑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7-4. 협의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는 종전의 실시료가 계속하여 적용된다.

# 제 8 조 (납입의 고지)

을은 제 6 조의 실시료를 갑에게서 고지 받은 후, ()일 이내에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고 등의 의무)

9-1. 을은, 매 반기별로 해당기간에 있어서의 본발명의 실시에 관한 제품의 매출액 기타 갑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반기 종료 후 ()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 갑은 전항 9-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로부터 본발명의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을의 사업장에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파견하여, 합리적인 시간내에 실시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나 조사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제 10 조 (실시권의 이전 등의 취급)

을은, 합병 또는 본발명의 실시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기타 본발명의 실시권의 이전 기타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서면에 의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 제 11 조 (특허표시)

을은 본발명의 실시에 관한 제품, 당해 제품의 포장 및 제품에 관한 카타로그 등에 당해 특허표시를 부착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 제 12 조 (권리의 보전 등)

12-1. 갑은, 본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취소결정이 있은 경우,

특허무효의 심판청구가 있은 경우,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 또는 취소결정 혹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뜻을 을에게 신속히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출원 중인 특허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인 경우는 내용에 맞게 수정해야 함)

12-2. 갑은,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그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한다.

12-3. 갑은,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명세서 혹은 도면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는 것으로한다.

12-4. 갑이,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제 3 자에게 이전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제 13 조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13-1. 을은,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제 3 자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함께 협력하여 침해배제의 수단을 강구한다.

13-2. 침해배제의 수단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4 조 (제 3 자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의 면책)

을이 본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갑은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 15 조 (비밀유지)

15-1. 을은, 본계약의 계약기간 중 및 계약종료 후 ()년 간, 갑으로부터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제공된 일체의 기술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사전의 서면동의에 의한 갑의 동의 없이제 3 자에 이것을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당해 기술정보에 대해서, 이미 공지된 것, 을이 제 3 자에게서 비밀유지 부담 없이 정당하게 입수한 것, 을이 갑에게서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 또는 을이 갑에게서 제공받은 기술정보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15-2. 갑은, 본계약의 계약기간 중 및 계약기간 종료 후 ( )년 간, 실시감사 또는 관련발명의 통지에 의하여 을로부터 알게된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를 비밀로서 취급하고, 사전의 서면에 의한 을의 동의 없이는 제 3 자에게 이것을 개시하지 않는다. 단, 당해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에 대하여, 이미 공지된 것, 갑이 제 3 자에게서 비밀유지 부담 없이 정당하게 입수한 것, 갑이 을에게서 기술정보 또는 영업정보를 제공받은 시점에 이미보유하고 있던 것, 또는 갑이 을에게서 제공받은 기술정보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을 서면으로입증할 수 있는 것, 또는 행정운영상 공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5-3. 행정운영상 공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는 갑이 공개하기 이전에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제 16 조 (존속기간 연장에의 협력)

16-1. 을이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을이 특허권의 연장등록의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출원 및 권리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을 하기로 한다.

16-2. 갑은 전항 16-1 에도 불구하고,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신청의 출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6-3. 전항 16-2의 경우는, 갑은 을에게 이유를 붙여서 통지한다.

#### 제 17 조 (계약기간)

본계약은,()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본계약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제시 손해배상)

18-1. 갑은, 다음 제 1 호에서 제 5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는, 을에 대하여 ()월의 기한을 정하여 그 치유를 요구하고서, 해당기한 내에 을에 의한 치유가 없을 시 또는 제 6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을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하고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신청이 을에게 도달한 날자에 본계약은 종료한다.

- 1. 을이 제 2 조에서 규정한 실시권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 2. 을이 제 6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실시료의 지불이 현저히 지연된 경우 또는 제 6 조의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경우
- 3. 을이 제 9 조에서 정한 보고서의 제출을 ( )월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제 9 조에 의한 조사 에 응하지 않는 경우
- 4. 을이 본계약의 실시에 있어서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
- 5. 을이 직간접을 불문하고,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 6. 을이 제 1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8-2. 을은, 다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에 대하여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치유를 구하고 해당기간 내에 갑에 의한 치유가 없을 시 또는 제 2 호에서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하고 본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신청이 갑에게 도달한 날자에 본계약은 종료한다.

- 1. 갑이 제 13 조에서 규정하는 침해배제의 수단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 2. 갑이 제 1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 3.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그 권리범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4. 본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18-3. 갑 또는 을은, 앞서의 2 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을 또는 갑이 본계약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의무의 이행에 관한 최고를 하고 해당기한 이내에 을 또는 갑에 의한 이행이 없을 경우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고서 본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계약의 종료일은 해제의 신청이

을 또는 갑에게 도달한 날자로 한다.

18-4. 갑 또는 을은, 본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기타 사실에 반하는 보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고, 본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8-5. 갑 또는 을은, 앞서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을 또는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의 종료 및 종료시의 의무)

DeltaTech-Korea Ltd. (www.deltatech.co.kr)

19-1. 을은, 앞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본발명의 실시에 관계되는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의 것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을 경우는 해당 생산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만 한다. 지불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19-2. 앞서 19-1 에 있어서, 갑과 을은 실시료 지불채무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계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 20 조 (계약의 갱신)

20-1. 갑 또는 을은 본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한 ()년을 한도로 본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0-2. 갑 또는 을은 본계약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본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의 ( )개월 전까지, 을 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20-3. 앞서 20-2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 제 21 조 (기술정보의 제공)

21-1. 갑은 을에 대하여, 본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본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제공한다.

21-2. 을이 21-1 항 이외에 본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을 희망할 경우는, 갑에게 그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21-3. 앞서 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 22 조 (관련발명의 취급)

22-1. 을은, 을에 속하는 종업원이 본발명에 관련하여 발명을 하여, 당해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경우에, 을에 속하는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행한 사실에 대하여 갑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단, 본발명이 이미공지가 되고 또 갑에게서 제공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기술정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22-2. 을에 속하는 종업원 및 갑에 속하는 직원이 본발명에 관련하여 공동으로 발명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명에 속하는 특허권(특허를 받을 권리를 포한한다)의 귀속에 대해서는, 을과 갑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 23 조 (계약비용)

본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하여 갑과 을은 각각 자기의 비용을 부담한다.

# 제 24 조 (의문이 있는 경우)

본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25 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25-1. 본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25-2. 본계약의 성립 및 효력, 동시에 본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 및 이행 등에 관해서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 26 조 (부속서류)

26-1. 본계약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속서류에서 정한다.

26-2. 갑과 을은, 경제사정 기타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을 또는 갑의 신청에 따라

앞서 26-1의 부속서류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26-3. 앞서 26-2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부속서류에 정한 것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1통을 보관한다.

()년()월()일

갑 : 을 :